

#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및표준양식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 보고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세부 역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자산·비용·수익의 분류대상 세부역무(이하 “역무”라 한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화역무

가.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시내전화역무중 이용계약자와의 전화가입계약에 의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 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시내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시내전화역무중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으로부터 시외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시외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시외전화역무로서 시외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에서 국제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라. 국제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화 서비스

마. 공중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전화역무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용 단말기기와 동단말기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 114번호안내 : 114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

### 2.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가.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선설비임대역무중 통화권내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나.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선설비임대역무중 통화권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다.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선설비임대역무중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라.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선설비임대역무중 방송용등 특수한 용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 3. 이동통신역무

가. 이동전화서비스 :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동체에 설치하는 송·수신설비를 가진 자

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 나. 무선호출서비스 :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 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 주파수를 공유하는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 설비를 가진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 라. 기타 무선통신서비스 : 개인휴대통신서비스, CT-2서비스, 공항무선전화서비스, 선박무선통신서비스등 주파수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서비스.

#### 4. 기타 전기통신업무

- 가. 행정통신서비스 : 국가비상시를 대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상호간의 안정적인 전기통신업무 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나. 전보서비스 : 발신인이 청구한 문안을 접수하여 전송 및 수신인에게 배달하여 주는 서비스
- 다. ISDN서비스 : 하나의 가입자회선을 통하여 국내외 구간에 부호, 음성, 음향 및 영상을 전송·교환하는 통신망 서비스
- 라. 종합유선방송전송로대역서비스 :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분계점으로부터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까지의 전송선로시설을 대역해 주는 서비스
- 마. 부가통신서비스 : 이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검색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전송한 정보의 내용·형태·코드 또는 통신규약등을 변경하거나 비시간 통신방식으로 정보를 축적·전송하거나 변경없이 실시간 통신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

바. 기타 서비스 : 가목내지 마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비스

## 제 2 장 비용의 역무별 배부기준

제 3 조 ( 전기통신사업의 영업비용 ) 전기통신사업의 영업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운영비용 : 교환설비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중 감가상각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
2. 전송운영비용 : 전송설비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중 감가상각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
3. 선로운영비용 : 선로설비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중 감가상각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
4. 단말운영비용 : 단말장치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중 감가상각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
5. 정보통신운영비용 : 정보통신설비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중 감가상각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
6. 전원운영비용 : 전원설비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중 감가상각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
7.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 : 일반지원자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중 감가상각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
8. 판매 및 영업비 : 전기통신업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청구서발행, 요금의 수납, 판매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서 발생된 비용
9. 관리비 : 본사 및 현업부서의 관리부문에서 발생된 비용중 임원급여, 기획, 일반관리, 회계, 구매 등의 부문에서 발생된 비용
10. 감가상각비 : 유형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1. 경상연구개발비 : 연구부문에서 발생된 비용중 경상연구비 및 개발비등
12. 접속료 :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

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중 접속료 및 국제 정산부담금 등

13. 설비사용료 :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회선료등

14. 재부거래비용 : 동일사업자내에서 특정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서비스간 지불하는 비용

제 4 조 ( 직업비와 공통비) 발생비용을 역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직접비는 특정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직접분류가 가능한 비용으로 한다.
2. 공통비는 2개이상의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 5 조 ( 교환운영비용의 역무별 분류) ① 교환운영비용중 직접비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한다.

②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교환설비 취득가액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설비가액과 관련 있는 경우
3. 교환기 사용시간 : 비용의 발생이 교환기의 사용시간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기집계된 비용비율 : 비용의 발생이 역무와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제 6 조 ( 전송운영비용의 역무별 분류) ① 전송운영비용중 직접비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한다.

②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E1급을 1회선으로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T1급으로 산출한 운용회선수를 기준으로 하며, 회선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분류된 전송설비 취득가액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 7 조 ( 선로운영비용의 역무별 분류) ① 선로운영비용중 직접비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한다.

② 중계선로원가중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E1급

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는 T1급으로 산출한 운용회선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가입자선로원가중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운용중인 실선회선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 8 조 ( 단말운영비용의 역무별 분류) ① 단말운영비용중 직접비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한다.

②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제1항에 의한 직접비 금액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 9 조 ( 정보통신운영비용의 역무별 분류) ① 정보통신운영비용중 직접비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한다

②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제1항에 의한 직접비 금액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 10 조 ( 전원운영비용의 역무별 분류) ① 전원운영비용중 직접비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한다.

②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전원설비의 취득가액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 11 조 (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의 역무별 분류) ①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중 직접비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한다.

②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일반지원자산의 취득가액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 12 조 ( 판매영업비의 역무별 분류) ① 판매영업비중 직접비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한다.

②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 부원가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고객서비스비용집단 : 가입자수 또는 처리건수
2. 요금청구 및 수납비용집단 : 청구건수
3. 판매활동촉진비용집단 : 매출액

제 13 조 ( 관리비의 역무별 분류) ① 관리비중 직접비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한다.

②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제5조 내지 제12조 기준에 의하여 역무별로 기집계된 영업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 14 조 ( 감가상각비의 역무별 분류) 감가상각비의 역무별 분류에 관하여는 제3장의 당해 자산의 역

무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제 15 조 (경상연구개발비의 역무별 분류) 경상연구개발비의 역무별 분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 16 조 (접속료의 역무별 분류) ① 접속료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한다.

② 직접 분류가 어려운 경우의 역무별 분류는 역무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 17 조 (설비사용료의 역무별 분류) 설비사용료의 역무별 분류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 18 조 (영업외비용 등의 역무별 분류) ① 출연금 중 직접비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하고,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역무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비 상각액의 역무별 분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전기통신설비처분손실중 직접비는 역무별로 직접 분류하고, 공통비의 역무별 분류는 해당 전기통신설비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④ 법인세비용의 역무별 분류는 규칙 제11조의 역무별(다만, 전화역무의 경우에는 시내·시외·국제전화) 영업이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 19 조 (내부거래의 인식) ① 규칙 제11조와 본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른 부문의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부거래 제공 및 이용서비스별로 내부거래수익 및 내부거래비용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내부거래 제공서비스 : 시내전화, 시외전화, 공중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등으로 한다.
2. 내부거래 이용서비스 : 시외전화, 국제전화, 부가통신역무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내부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전화망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접속료로 하고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상 요금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제 3 장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역무별 배부

제 20 조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분류) ① 역무별 직접 분류가 가능한 전기통신설비는 직접 분류한다.

② 역무별 직접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설비 : 역무별로 직접분류된 교환설비 가액 비율
2. 전송설비 : E1급을 1회선으로 하는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 다만 E1급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T1급으로 산출한 회선수를 사용하며, 회선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가액 비율
3. 선로설비 : 가입자선로는 운용실선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중계선로는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분류된 선로설비 가액 비율
4. 단말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분류된 비율
5. 전원설비 : 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분류된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가액 비율

제 21 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분류) ① 역무별 직접 분류가 가능한 일반지원자산은 직접 분류한다.

② 역무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망지원자산과 기타지원자산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통신망지원자산 :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가액 비율
2. 기타지원자산 : 판매영업비 및 관리비의 직접비 합계 비율

③ 제2항의 통신망지원자산과 기타지원자산의 분류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선박은 통신망지원자산으로 분류한다.
2.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통신망지원자산과 기타지원자산으로 분류한다.

3. 기타 차량운반구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제 22 조 (미착자산의 역무별 분류) ① 역무별 직접 분류가 가능한 미착자산은 직접 분류한다.

② 역무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역무별 분류는 전기통신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가액의 합계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 23 조 (건설중인 자산의 역무별 분류) ① 건설중인 역무별 분류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 24 조 (무형자산의 역무별 분류) ① 역무별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무형자산은 직접 분류한다.

② 역무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설비 관련 무형자산 : 역무별 유형자산 가액 비율
2. 영업 관련 무형자산 : 역무별 매출액 비율

#### 제 4 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제 25 조 (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 ①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비용은 당해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운영비용 : 지역별 교환시설수 또는 가입자수
2. 전송운영비용 : 지역별 전송시설수 또는 가입자수
3. 단말운영비용 : 관련 가입자수
4. 전원운영비용 : 전원설비의 취득가액 비율
5. 판매영업비 : 가입자수
6. 관리비 : 기집계비용 비율
7. 접속료 : 매출액 비율
8. 설비 사용료 : 직접분류 또는 가입자수 비율
9.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분류와 동일한 기준

제 26 조 (영업외비용 등의 지역별 분류) ① 지역별

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외비용등은 당해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외비용 등의 지역별 분류는 제18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 27 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당해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지역별 분류는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단, 전원설비는 전원설비 가액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 28 조 (배부기준의 적용) ①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② 이 고시에 제시한 배부기준이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 29 조 (보고서의 제출등)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양식은 별표와 같다.

② 역무별 회계분리 지침서에는 세무회계단위기관이 표시된 조직도, 각 기관별 배부방법, 원가의 흐름도, 원가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역무별 자산·비용·수익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0 조 (보고서의 검증) 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 31 조 (보고서의 공개) 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를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